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292호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431 호 「하천법」 위반(불법점용)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치 수 과 2
공시송달 공고(고잔동 744-1번지)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6-1431호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7. 30.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7. 30. ~ 2026. 8. 14.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위 치	행 위 자		위반사항
	성 명	주 소	
고잔동 744-1번지	미상	미상	하천구역 불법점용

6. 유의사항

- 가. 상기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8. 14.(금)까지** 인천 남동구청 치수과 하천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 남동구청 치수과 하천팀(☎032-453-8460, 846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신자 미상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하천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미상					
	주 소	미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하천법」 제33조 위반 하천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한 행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44-1번지(국유지)일원에 점용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한 하천구역의 시정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서명	치수과	담당자	김익현 김선홍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전화번호	032-453-8464 032-453-8465
		전자우편 주소	wauhee20@korea.kr jekng@korea.kr			팩스번호	032-453-8409
	제출기한		2026년 8월 14일(금)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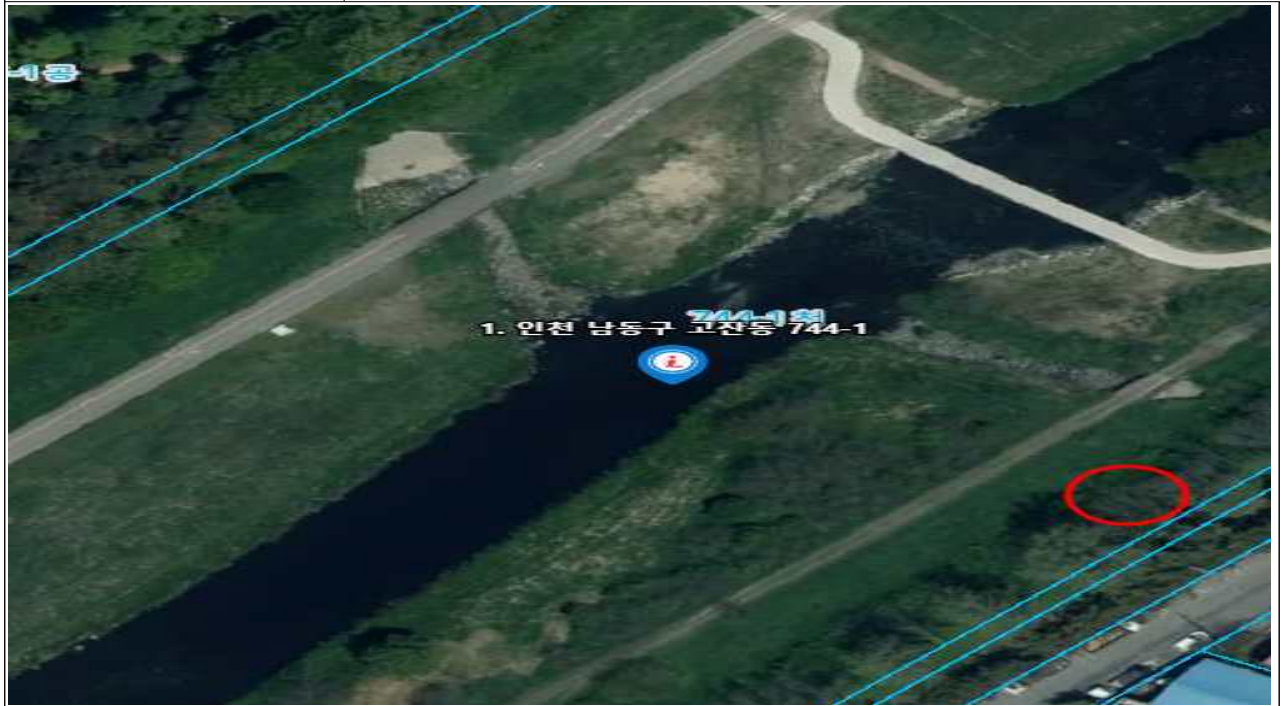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하천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